

日政 초기의 高等教育 제도

—韓國 近代 高等教育制度 变천사(2)—

金英宇

(公州大 教育學科)

韓國 近代 高等教育制度 变천사

- 開化期의 高等教育 제도
- 日政 초기의 高等教育 제도
- 日政 중기의 高等教育 제도(上)
- 日政 중기의 高等教育 제도(下)
- 日政 말기의 高等教育 제도

1. 序

제 1 차 朝鮮教育令 施行期(1911. 8~1922. 2)에 해당하는 日政 初期에 있어 日帝는 韓國의 植民地化를 도모하기 위해 武斷統治를 자행하는 한편 한국인의 愚民化를 적극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日帝는 韩國人에게 저급한 教育만을 허용하고, 高等教育을 철저히 억제하였다. 따라서 日帝의 고등교육 억압 정책은 한국인의 日本人化를 위한 우민화 정책의 수단이기도 하였다.¹⁾

이같은 망침에 따라 日帝는 既設高等教育機關을 폐지시키고, 官立 專門學校 制度를 새로 마련하여 한국의 고등교육을 그들의 통제하에 두었다. 日帝는 朝鮮教育令 속에 專門學校에 관한 조항을 넣고, 전문학교에 관한 별도의 규정도 제

정하여 京城專修學校와 水原農林學校를 전문학교로 개편시키고, 京城醫學專門學校와 京城工業專門學校를 신설하였다.

한편 普成専門學校는 普成法律商業學校로 개편되고, 경신학교 대학과와 大同法律専門學校가 폐지되었으며, 東洋協會殖民専門學校 京城分校가 私立京城高等商業學校로 개편되었다. 그리고 연희전문학교와 세브란스 연합 의학 전문학교가 인가를 받았다.

2. 高等教育機關의 制度的 概要

조선 총독부는 1911년 8월에 朝鮮教育令을 제정하여 韩國人에 대한 學校教育의 유형을 보통교육·實業教育·専門教育으로 하고, 보통교육은 普通學校와 高等普通學校에서, 實業教育은 實業學校에서, 專門教育은 專門學校에서 각각 실시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때의 高等教育機關은 專門學校였다.

조선 총독부는 우선 朝鮮教育令 속에 專門學校의 目的·수업 연한·입학 자격·설치와 폐지 등에 관한 규정을 넣었다. 또한 1915년 3월에

1) 金鐘皓外, “韓國 高等教育의 歷史的 变천에 관한 研究”, 韓國大學教育協議會, 1989, p.89.

専門學校 規則을 제정하여 專門學校를 制度面에서 완비한 후 1916년 4월부터 전문학교를 설립하여 전문학교를 통해 해당 분야의 高等教育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여기서는 먼저 朝鮮教育令에 포함된 專門學校 관계 규정을 통해 전문학교의 制度를 살펴 보고, 專門學校 規則에 明示된 專門學校의 制度의 개요를 구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朝鮮總督府는 1911년 8월 23일자 勅令 제229호로 제정한 朝鮮教育令²⁾ 속에 전문학교에 관한 규정을 넣어 專門學校는 고등의 학술과 技藝를 교수함을 目的으로 하고, 수업 연한은 3년 내지 4년이며, 입학 자격은 16세 이상으로 高等普通學校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學力を 가진 자로 하였다.

조선총독부는 1915년 3월 24일자 朝鮮總督府令 제26호로 專門學校 規則³⁾을 제정하였는 바, 本 規則에 명시된 專門學校의 제도적 개요는 다음과 같다.

① 教科目

修身·國語·專門에 관한 사항·體操(5조)

② 入學資格

신체 건전하고 品行 方正한 자(10조)

③ 退學

學校長은 性行 不良하여 개선의 가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學則 기타 學校의 명령에 배하고 개전의 가능이 없는 자, 學力이 劣等하여 成業의 가능이 없다고 인정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1월 이상 결석한 자 또는 出席이 不常한 자에게 퇴학을 명한다(12조).

④ 징계

學校長은 훈육상 필요가 있는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다(13조).

⑤ 學年

4월 1일부터 翌年 3월 31일(14조).

朝鮮總督府는 1916년 4월 1일자 勅令 제80

호로 朝鮮總督府 專門學校官制를 제정하여⁴⁾ 官立專門學校의 직원으로 學校長·教授·助教授·書記를 두되, 학교장은 조선 총독의 命을 받아 校務를 掌理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하며, 교수와 조교수는 生徒의 教育을 掌하여, 서기는 學校長의 지휘를 承하여 서무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3. 官立專門學校의 制度 概要

日帝는 1911년 8월에 朝鮮教育令을 제정하여 韓國에 대한 植民地教育을 실시하면서 高等(專門學校) 教育에 있어서는 당시 한국의 民度에 비추어 아직 이를 실시할 시기가 못되었다는 구실로 朝鮮教育令上에 규정한 정규의 高等教育을 초기에는 실시하지 않다가 그후 中等教育의 보급과 時勢의 진보에 따라 한국에서 고등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朝鮮總督府⁵⁾는 1915년 3월에 專門學校 規則을 제정하고, 1916년 4월에 官立 고등교육 기관으로 京城專修學校, 京城醫學專門學校, 京城工業專門學校를 설치하고, 1918년 4월에 水原農林專門學校를 설치하였다.

이하에서는 官立專門學校의 制度를 각 專門學校別로 구체적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1) 京城專修學校

朝鮮總督府는 1911년 10월에 京城專修學校官制를 제정하여 종전의 法學校⁶⁾를 京城專修學校로 개편하여 法律과 經濟에 관한 高等教育을 실시하도록 했다가 1915년 3월에 제정한 專門學校 規則에 의거하여 1916년 4월에 京城專修學校를 專門學校로 개편하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먼저 전문학교로 개편되기 이전의 京城專修學校와 전문학교로 개편된 후의 京城專修學校의 制度의 개요를 모두 고찰하고자 한다.

朝鮮總督府는 1911년 10월 10일자 勅令 제251호로 ‘京城專修學校官制’⁷⁾를 제정하여 京城

2) 朝鮮總督府官報 제305호(1911.9.2).

3) 동 제789호(1915.3.24).

4) 1916년 4월 1일자 朝鮮總督府官報號外.

5) 朝鮮總督府學務局, 朝鮮教育要覽, 昭和 4, p.115.

6) 1894년에 설치되었던 法官養成所가 1909년 10월에 法學校로 개편됨.

7) 朝鮮總督府官報 제342호(1911.10.16).

専修學校의 제도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① 目的

朝鮮人 男子에게 法律과 經濟에 관한 지식을 가르친다.

② 職員의 種類

學校長·敎諭(生徒의 教育을 담당)·書記

③ 修業年限

3년

④ 入學資格

신체 건전, 品行 방정한 16세 이상인 자로 高等普通學校 卒業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學力이 있는 자.

조선 총독부는 1916년 4월 1일자 朝鮮總督府令 제26호로 京城專修學校 規程을 제정하고⁸⁾ 종전의 京城專修學校를 전문학교로 개편하여 1916년 4월 15일에 專門學校로서의 開校式을 거행함으로써⁹⁾ 京城專修學校는 法律과 經濟에 관한 지식을 가르치는 전문학교로 재출발하게 되었는 바, 京城專修學校 規程에 명시된 本校의 制度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① 目的

本校는 朝鮮教育令에 기초하여 法律·經濟에 관한 專門教育을 하는 곳으로서 公私의 업무에 종사할 자를 양성하는 것을 本旨로 함.

② 修業年限

3년

③ 教科目

수신·국어·법학통론·현법·행정법·民法·刑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국제법·經濟學·實務演習·체조

④ 學期

3학기

⑤ 職員의 種類

조선 총독부는 1916년 4월 1일자 勅令 제80

호로 朝鮮總督府 專門學校官制를 제정하여¹⁰⁾ 京城專修學校의 직원으로 校長(1인), 教授(2인), 助教授(3인), 書記(1인)를 두도록 하였다.

⑥ 入學資格

京城專修學校는 1916년 4월에 入學시킬 學生을 모집하면서 응모 자격을 신체 건전하고 品行 방정한 자, 연령 16세 이상으로 高等普通學校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學力이 있는 자, 在學中 그 지망을 변경치 아니한 자, 本校 졸업 시까지 學資 계속의 방도가 확실한 자 등으로 하였다.¹¹⁾

2) 京城醫學專門學校

조선 총독부는 1910년 9월에 朝鮮總督府醫院官制를 제정하고 朝鮮總督府醫院에 附屬醫學講習所를 두도록 하여 종전의 大韓醫院附屬醫學校¹²⁾를 조선 총독부 의원 부속 의학 강습소로 개편하여 醫師·산파·간호부의 양성 교육을 실시하다가 1916년 4월에 京城醫學專門學校를 신설하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먼저 1910년부터 1916년까지 醫學에 관한 고등교육을 실시한 조선 총독부 의원 부속 의학 강습소의 制度의 개요를 살펴 보고 京城醫學專門學校의 制度의 개요를 고찰하고자 한다.

조선 총독부는 1910년 9월 30일자 勅令 제368호로 朝鮮總督府醫院官制를 제정하고¹³⁾ 조선 총독부 의원에 의사·산파·간호부를 양성하는 임무를 가진 附屬醫學講習所를 두고, 本所의 의학교육을 담당할 직원으로 教官과 教員을 두도록 하였다.

조선 총독부는 1911년 2월 20일자 조선 총독부령 제19호로 조선 총독부 의원 부속의학 강습소 규칙을 제정하여¹⁴⁾ 本所에 4년제의 醫科, 2년제의 助產婦科, 1년 반(3학기) 과정의 간호

8) 동 1916년 4월 1일자 號外.

9) ‘専門學校開校式’, 每日申報 제3165호(1916.4.12).

10) 조선 총독부 관보 1916년 4월 1일자 號外.

11) ‘生徒募集’(京城專修學校), 조선 총독부 관보 제1037호(1916.1.21).

12) 1899년에 신설된 醫學校가 1907년 4월에 대한의원교육부로 되었다가 1908년에 대한의원의육부로 개명되고, 1909년에 대한의원 부속 의학교로 개편되었다.

13) 朝鮮總督府官報 제28호(1910.9.30).

14) 동 제140호(1911.2.20).

부과를 두되, 學生定員은 醫科 75 명, 조산부과 20 명, 간호부과 20 명으로 하였다. 學年은 4 월 1 일부터 翌年 3 월 31 일까지로 하고, 學期는 전 학기(4. 1~10. 20)와 후학기(10. 21~3. 31)로 하며, 교수 일수는 1 학년에 약 42 주로 하되 매주의 교수 시수는 약 30 시간으로 하였다. 入學資格은 韓國人 男子(醫科)와 女子로 17세 이상 25 세 이하의 신체 건전하고 品行 方正한 자로 하되, 入學試驗을 통하여 學生을 선발하도록 하였다. 教育上 필요한 경우 學生을 정제할 수 있으며 性行 不良者, 질병이나 學力이 열등하여 成業할 가능이 없는 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1 개월 이상 결석한 자는 退學을命할 수 있도록 하였다. 本 講習所에서는 당분간 수업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하고, 在學生에게 학자금을 지급하되 醫科는 3 분의 1, 조산부과와 간호부과는 半에 해당하는 學生에게 학자금을 급여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 총독부는 1911년 2 월 20 일자 조선 총독부령 제20호로 조선 총독부 의원 부속 의학 강습소 생도 학자금 급여 규칙을 제정하였다¹⁵⁾ 醫學講習所生에게 식비, 폐복비, 잡비 등 의 學資를 月別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조선 총독부는 1912년 3 월에 醫學講習所 規則을 개정하여 女子에게도 醫科에의 入學을 허가하였는 바, 이는 우리나라에서近代的女醫의 배출을 위한 첫 시도였다.¹⁶⁾ 또 입학 자격을高等普通學校 출신으로 끌어 올려 醫學生의 질을 개선하였다.¹⁷⁾ 1914년부터는 醫學講習所 출신자에게 졸업과 동시에 의사 면허를 주도록 하였다.¹⁸⁾ 1916년 4 월 醫學專門學校가 신설됨에 따라 醫學講習所는 신설되는 京城醫學專門學校로 계승되었다.

조선 총독부는 1916년 4 월 1 일자 조선 총독부령 제27호로 京城醫學專門學校 規程을 제정하

여 京城醫學專門學校를 신설하였는 바, 本校의 制度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¹⁹⁾

朝鮮教育令에 기초하여 醫學에 관한 專門敎育을 실시하는 곳으로서 질병 진료의 지식과 기능을 갖춘 醫師를 양성함을 本旨로 하는 京城醫學專門學校는 4 년제로 入學資格은 연령 16 세 이상으로 高等普通學校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學力이 있는 자(한국인), 日本人은 연령 17 세 이상으로 中學校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學力이 있는 자로 하였다. 學科目과 課程은 修身(수신의 요지), 국어나 조선어(읽기·해석·회화·書取·암송·작문), 독어·수학·물리학·화학·해부학·조직학·생리학·의화학·위생학·세균학·병리학·藥物學·내과·외과·소아과·피부과·미독과·이비인후과·안과·產科婦人科·精神病科·치과·외래환자 임상강의(각 과)·法醫學·체조 등이었다.

조선 총독부는 1916년 4 월 1 일자로 조선 총독부 전문학교 관제를 제정·공포하여 京城醫學專門學校에 직원으로 校長, 教授(3 인), 助教授(1 인), 書記(1 인)를 두도록 하였다.²⁰⁾

조선 총독부는 1918년 8 월 13 일자 勅令 제313 호로 朝鮮總督府 專門學校官制를 개정하여 京城醫學專門學校에 日本人 學生만을 위한 特別醫學科를 두도록 하고²¹⁾, 같은 해 8 월 19 일자 朝鮮總督府令 제83호로 京城醫學專門學校 規程을 개정하여 京城醫學專門學校의 교과과정과 每週 교수 시수를 바꾸고, 特別醫學科의 교과과정과 교수 시수를 제정하였다.²²⁾ 京城醫學專門學校의 教科課程에 있어서는 조선어·생리학·세균학 등 3개 과목을 없애고, 微生物學(강의·실험, 법정 전염병·풍토병)을 새 과목으로 넣었다. 京城醫學專門學校 特別醫學科는 4 년제로 연령 17 세 이상으로 中學校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15) 상동.

16) 서울大學校 醫科大學史編纂委員會, 서울大學校 醫科大學史(1885~1978). 서울大學校 出版部, 1978, p. 40. 17) 위의 책, p. 41.

18) 상동.

19) 朝鮮總督府官報, 1916년 4 월 1 일자 號外.

20) 勅令 제80호, 1916. 4. 1자 朝鮮總督府官報 號外.

21) 朝鮮總督府官報 제1811호(1918. 8. 19).

22) 상동.

學力이 있는 자를 入學資格으로 하고 教科目은 修身·조선어·독어·수학·물리학·화학·해부학·조직학·생리학·의화학·위생학·미생물학·병리학·약물학·내과·외과·소아과·피부과·미독과·이비인후과·안과·產科婦人科·精神病科·치과·法醫學·체조 등이었다.

3) 京城工業專門學校

韓國에서 工業分野에 대한 전문교육이 실시된 것은 1890년대로, 舊韓國政府는 1899년에 官立商工學校를 설립하여 상업과 함께 공업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게 하다가 1904년에 本校를 官立農商工學校로 개편하여 계속해서 工業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게 하였다. 또한 政府는 1907년에 官立工業傳習所를 신설하여 工業分野에 관한 教育을 전담하도록 하였다. 韓國을 強占한 日帝는 1912년에 조선 총독부로 하여금 官立工業傳習所를 朝鮮總督府 中央試驗所 附屬工業傳習所로 개편하여 계속해서 공업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게 했다가 1916년에 京城工業專門學校를 신설하여 工業에 관한 高等教育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먼저 京城工業專門學校 설치 이전에 실시되었던 工業에 관한 專門教育의 制度의 개요를 살펴 보고, 이어서 京城工業專門學校의 制度의 개요를 고찰하고자 한다.

조선 총독부는 1912년 3월 27일자 勅令 제36호로 朝鮮總督府 中央試驗所官制를 제정하여 工業에 관한 시험·분석·감정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中央試驗所를 설치하고, 중앙 시험소에 工業傳習所를 부치하도록 하였다.²³⁾ 이에 따라 종전의 官立工業傳習所가 1912년 4월에 中央試驗所 부처 工業傳習所로 개편되었는 바, 本所는 工業에 관한 기술을 傳習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곳으로 所長·技師·書記·技手 등의 직원을 두되, 소장은 中央試驗所長으로 보하고, 技師는 學生의 傳習을 담당하며 書記와 技手는 庶務와 技術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조선 총독부는 1915년 3월 15일자 朝鮮總督府令 제13호로 朝鮮總督府 工業傳習所 特別科規程을 제정하여²⁴⁾ 1915년 4월에 特別科를 신설하고 소정의 教育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高等普通教育을 받은 자로서 工業에 종사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學術과 技藝를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 特別科는 3년제로 修業과 · 요업과 · 응용화학과 등 3科를 두고, 입학 자격은 高等普通學校卒業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學力이 있는 만 16세 이상의 韓國人 男子나 中學校卒業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學力이 있는 17세 이상의 日本人 男子로 하였다. 特別科의 學科目은 修身·국어(한국인)·조선어(일본인)·영어·수학·물리학 및 물리실험·화학·圖畫·체조·공업·위생·부기·경제·법령 등의 공통 과목과 전공별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染織科의 전공 과목은 응용화학·기계공학 일반·전기공업 일반·직물원료 및 계산·機械 및 力械機·染織物仕上 및 整理法·分解 및 意匠·染色法 및 染色諸機械·紡績機構·분석화학실습·공장건축법·원료 및 제품 시험 並鑑定·設計製圖工場實習 및 實驗 등이고, 應用化學科의 전공 과목은 광물학·야금학 및 試金術·製造用諸機械·기계공학 일반·전기공학 일반·응용전기화학·응용화학·제조화학·공장건축법·분석화학 및 분석실습·原料 및 製品試驗 並鑑定·設計製圖工場 및 實驗 등이며, 烹業科의 전공 과목은 광물학 및 지질학·冶金學·기계공학 일반·전기공학 일반·도자기제조법·응용화학·硝子 및 琥珀·건축용품제조법·製造用諸機械·築窯法·공장건축법·분석화학 및 실습·原料 및 製圖試驗 並鑑定·設計製圖工場 및 實驗 등이다.

조선 총독부는 1916년 4월에 工業傳習所의 特別科를 京城工業專門學校로 승격 개편하고, 本科는 京城工業專門學校 부속 工業傳習所로 개편하였다. 즉 조선 총독부는 1916년 4월 1일자 朝鮮總督府令 제28호로 京城工業專門學校 規程을 제정하여²⁵⁾ 京城府의 東崇洞에 京城工業專門

23) 朝鮮總督府官報 제481호(1912.4.8).

24) 동 제782호(1915.3.15).

25) 동 1916.4.1자 號外.

學校를 설치하고, 종전의 中央試驗所 부처 工業傳習所를 本校의 附屬工業傳習所로 삼아 1916년 4월 25일에 開校하도록 하였다.²⁶⁾

京城工業専門學校 規程에 의거하여 京城工業専門學校의 制度의 개요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朝鮮教育令에 基하여 工業에 관한 專門教育을 실시하는 처소로서 당시 韓國에 있어 工業의 진보 발전에 필요한 技術者 또는 經營者의 양성을 本旨로 한 京城工業専門學校는 3년제로 染織科·應用化學科·窯業科·土木科·建築科 등의 학과를 두고, 입학 자격은 16세 이상으로 高等普通學校 卒業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學力이 있는 자나 日本人은 17세 이상으로 中學校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學力を 가진 자로 하였다. 學年을 3학기로 나누었으며, 學科目은 각 학과의 共通 과목과 전공 과목으로 되어 있는 바, 共通科目은 修身·국어(朝鮮人)·조선어(日本人)·영어(수의과)·수학·물리학 및 물리실험·화학·圖畫工業衛生 및 공업부기·체조 등이다. 學科別 전공 과목은 染織科는 工業經濟 및 法令製造化學·기계공학 일반·전기공학 일반·織物原料·機織法·染織物仕上 및 整理法·分解 및 意匠·染色法 및 染色諸機械·紡績機構·分析化學實驗·工場建築法·原料 및 製品試驗 並 鑑定·設計·製圖·工場實習 및 實驗 등이고, 應用化學科는 工業經濟 및 法令·광물학·冶金學 및 試金術·製造用諸機械·기계공학 일반·전기공학 일반·응용전기화학·응용화학 大意·제조화학·공장건축법·분석화학실험·原料 및 製品試驗 並 鑑定·設計·製圖·工場實習 및 實驗 등이며, 窯業科의 학과목은 工業經濟 및 法令·礦物學 및 地質學·冶金學·기계공학 일반·전기공학 일반·도자기제조법·제조화학·硝子 및 琥珀·건축용품제조법·製造用諸機械·築窯法·공장건축법·분석화학실험·原料 및 製品試驗 並 鑑定·設計·製圖·工場實習 및 實驗 등이다. 土木科의 학과목은 공업경제 및 토목행정·지질학·측량·가옥구조·응용역학·기계공학 일반·전기공학 및 실험·工業用金屬·토목공학·재료시험·設計·製圖 및 實習 등이고, 建築科의 과목은 공업경

제 및 토목행정·지질학·측량·건축용 재료·재료 強弱 및 구조 強弱·가옥구조시험법·설계 및 장식법·건축사·規矩法·特種建築·建築製圖 및 實習 등이다.

附屬工業傳習所는 工業에 종사할 徒弟의 양성을 目的으로 한 2년제로 입학 자격은 4년제 普通學校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學力を 가진 14세 이상인 자와 심상 소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學力이 있는 14세 이상의 日本人으로 하였다. 本所에는 木工科·金工科·織物科·化學製品科·陶器科를 두고 각 학과는 다시 다음과 같이 分科하였다. 즉 木工科는 造家分科·指物分科·車輪分科로, 金工科는 板金細工·鑄工·鍛工·仕上 등의 分科로, 織物科는 染物分科와 織物分科로, 化學製品科는 製紙와 製品의 兩分科로, 陶器科는 韓爐·模型·陶畫 등의 3分科로 각각 나누었다. 교과목은 修身·국어(朝鮮人)·조선어 및 한문(日本人)·수학·理科·圖畫·체조 등의 共通 과목과 學科別 전공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바, 學科別 전공 과목은 木工科가 材料 및 工具·製作法製圖·實習 등이고, 金工科의 전공 과목은 材料 및 工具·製作法·製圖·實習 등이며, 織物科의 전공 과목은 色染法·機織法·圖案·實習 등이다. 化學製品科의 전공 과목은 製造化學과 實習이고, 陶器科의 전공 과목은 도자기제조법·陶畫·實習 등이다.

한편, 조선 총독부는 1916년 4월 1일자 勅令 제80호로 朝鮮總督府専門學校官制를 제정하여 京城工業専門學校는 工業에 관한 지식 기능을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京城工業専門學校에 부속 工業傳習所를 두어 工業에 관한 技術을 傳習하도록 하는 한편 本校에 학교장·교수·조교수·서기 등의 직원을 두되, 學校長은 조선 총독부 中央試驗所長이 겸임하도록 하였다.

조선 총독부는 1917년 3월 14일자 朝鮮總督府令 제20호로 京城工業専門學校 規程을 개정하여 本校에 鎮山科를 증치하고, 鎮山科의 학과목은 修身·국어(조선인)·조선어(일본인)·영어(수의과)·수학·물리학 및 물리실험·화학·공업위생 및 공업부기·공업경제 및 법령·광물학

26) ‘専門校開校式’ 每日申報 제3165호(1916.4.12.).

및 지질학·鑛床學·採礦學 및 選礦學·冶金學 및 試金術·鐵冶金學 및 製造冶金學·측량법·토목공학 일반·기계공학 일반·전기공학 및 실험·공장건축법·吹管分析·분석화학실험·광물 및 암석감정·設計製圖 및 實習·제조 등으로 정하였다.²⁷⁾ 이상의 규정에 따라 京城工業専門學校는 1917년 4월부터 鐵山科를 설치하여 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조선총독부는 1918년 2월 20일자 朝鮮總督府令 제17호로 京城工業専門學校 規程을 일부 개정하여²⁸⁾ 同校 부속 工業傳習所의 수업 연한을 3년으로 연장하고, 金工科의 板金細工分科를 金屬細工分科로 변경하는 한편 木工科의 교과과정을 造家分科와 指物·車輪分科로 나누어 편성하고, 金工科·織物科·陶器科 교과과정을 개정하였으며, 化學製品科의 교과과정을 製品分科와 製紙分科로 나누어 마련하였다.

조선총독부는 1919년 12월 11일자 조선총독부령 제191호로 京城工業専門學校 規程을 개정하여 선택 과목이던 英語를 필수 과목으로 과하도록 하였다.²⁹⁾

조선총독부는 1920년 3월 16일자 朝鮮總督府令 제25호로 京城工業専門學校 規程을 개정하여 本校 부속 공업 전습소의 입학 자격 연령을 12세로 하였다.³⁰⁾

4) 水原農林専門學校

우리나라의 경우 國家的 次元에서 農業 분야의 專門教育을 실시한 것은 1904년에 政府가 官立 商工學校를 官立 農商工學校로 개편한 데서 비롯된다. 정부는 1906년 9월에 農商工學校의 農業科를 모체로 官立 農林學校를 신설하여 農業에 관한 전문적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本校에 林學速成科(1906. 10)나 獣醫速成科(1909. 6)도 설치하여 林學과 獣醫에 관한 전문교육도 실시하도록 하였다. 韓國을 強占한 日帝가 한국의 식민 통

치를 위해 설치한 조선총독부는 1910년 10월에 官立 農林學校를 朝鮮總督府 農林學校로 개편하여 勸業模範場에 부치하도록 하고, 1917년 4월에는 本校에 專門科를 신설하여 專門學校 수준의 教育을 실시하게 했다가 1918년 4월에 專門科를 水原農林専門學校로 개편하였다.

여기서는 먼저 水原農林専門學校로 개편되기 이전에 실시되었던 農業分野 전문교육 기관의 制度의 개요를 살펴 보고, 水原農林専門學校(農林學校 專門科)의 制度의 개요를 고찰하고자 한다.

조선총독부는 1910년 9월 30일자 勅令 제370호로 朝鮮總督府勸業模範場官制를 제정하여 農林業에 필요한 실무를 教習하는 農林學校를 勸業模範場에 부치하도록 하였다.³¹⁾ 이에 따라 조선총독부는 1910년 10월에 官立 農林學校를 植業모범장 부속 農林학교로 개편하여 農林業에 관한 實務教育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조선총독부는 1910년 12월 16일자 조선총독부령 제61호로 農林學校 規則을 개정하여³²⁾ 研究科를 速成科로 바꾸고, 本科의 학과목을 修身·국어·수학·理科·博物·토지개량론·비료학·農具論·작물론·축산학·잠사학·농산제조학·작물병충학·임학통론·삼림생산학·삼림경영학·獸醫學大意·측량·경제 및 법규·실습 등으로 개정하였다.

조선총독부는 1913년 12월 17일자 조선총독부령 제109호로 朝鮮總督府 農林學校 規則을 개정하여³³⁾ 學年 성적 때문에 진급하지 못하는 자는 이후 1개월간 학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입학 자격 조건에 '田畠 2町步 이상을 소유한 자 또는 그子弟'를 추가하였으며, 정계와 退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학년 성적이 각 학과목 평점 40점 이상 총 평균 60점 이상으로 操行 및 實習點 각 60점 이상을 얻은 자가 아니면 進級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조선총독부는 1917년 3월 14일자 朝鮮總督

27) 朝鮮總督府官報 제1381호(1917.3.14).

28) 동 제1660호(1918.2.20).

29) 동 제2201호(1919.12.11).

30) 동 제2276호(1920.3.16).

31) 동 제28호(1910.9.30).

32) 동 제91호(1910.12.16).

33) 동 제416호(1913.12.17).

府令 제19호로 朝鮮總督府農林學校 專門科 規程 을 제정하고³⁴⁾ 1917년 4월에 專門科를 설치하여 高等普通學校 졸업자를 대상으로 農林業에 관한 專門學校 수준의 教育을 실시하였다. 高等普通教育을 이수한 자로 農林業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식 技能을 가르침을 目的으로 하는 專門科는 수업 연한이 3년이고, 입학 자격은 연령 16세 이상의 男子로 高等普通學校 졸업자나 이와 동등 이상의 學力を 가진 한국인과 연령 17세 이상의 男子로 中學校 졸업자나 이와 동등 이상의 學力を 가진 日本人으로 하되, 모두가 品行이 方正하고 신체 검사에 합격한 자로 하였다. 학년을 2학기(前學期·後學期)로 나누고, 학과목은 修身·국어(조선인)·조선어(일본인)·영어(수의과목)·수학·物理學 및 氣象·화학·작물·원예·비료·축산·잡사·농업공학·농업경제 및 법규·조림 및 삼림보호·삼림수학 및 삼림경리·삼림이용 및 삼림제조·측량 및 제도·자질 및 토양·植物 및 植物病理·동물 및 곤충·植物生理化學·가축사양학·세균학·실습 및 실험·체조 등이었다.

조선 총독부는 1918년 3월 30일자 勅令 제48호로 朝鮮總督府專門學校官制를 개정하여³⁵⁾ 農林業에 관한 지식 기능을 授함을 목적으로 하는 水原農林專門學校를 신설하도록 하고, 本校에 학교장·교수·조교수·서기 등의 직원을 두되, 校長은 朝鮮總督府勸業模範場長이 겸임하도록 하였으며, 1918년 4월 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農林學校를 부치하여 農林業에 필요한 실무를 교습하도록 하였다.

조선 총독부는 1918년 4월 1일자 朝鮮總督府 令 제30호로 水原農林專門學校 規程을 제정하여³⁶⁾ 종전의 農林學校專門科를 폐지하고 專門科在學生은 專門學校의 해당 학년에 편입하도록 하였다. 또한 農林學校를 부치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教育을 실시하게 하였다.

水原農林専門學校 規程에 명시된 水原農林専門學校의 制度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本校는 수업 연한이 3년으로 朝鮮教育令에 기하여 農林業에 관한 專門教育을 하는 곳으로 朝鮮에 있어서 농업의 개발 진보에 필요한 技術者 또는 經營者를 양성함을 本旨로 하며, 입학 자격은 연령 16세 이상으로 高等普通學校 졸업자나 이와 동등 이상의 學力を 가진 자며, 日本人은 연령 17세 이상으로 中學校 졸업자나 이와 동등 이상의 學力を 가진 자로 하였다. 學年(4.1~3.31)을 2학기(전학기와 후학기)로 운영하고, 교과목은 修身·국어(조선인)·조선어(일본인)·영어(수의과목)·수학·物理學 및 氣象·화학·작물·원예·비료·축산·잡사·농업공학·농업경제 및 법규·조림 및 삼림보호·삼림수학 및 삼림경리·삼림이용 및 삼림제조·측량 및 제도·자질 및 토양·植物 및 植物病理·동물 및 곤충·植物生理化學·가축사양학·세균학·실습 및 실험·체조 등이었다.

4. 私立高等教育機關의 制度的 概要

韓國을 强占하여 植民地化한 日帝는 1910년대에 專門學校規程을 제정하여 전문적인 고등교육을 실시하던 官學機關을 專門學校로 승격·개편시킨 반면에 私立 고등교육 기관은 私立學校規則을 개편하여 이를 억제하는 시책을 강구하였다. 즉 조선 총독부는 私立高等教育機關에 있어서는 그 維持·經營의 확실을 기한다는 구실로 財團法人에 한해 그 設立을 인정하는 方針을 채택·실시하여³⁷⁾ 재단 법인을 구성하지 못한 私立高等教育機關은 각종학교로 격하시켰다. 日政初期인 1910년대의 사립 고등교육 기관은 普成, 崇實, 세브란스연합의학교, 이화학당 대학, 연희, 사립동양협회 전문학교(사립경성고등상업학교) 등인 바, 연희전문학교와 사립경성고등상업학교는 日政初期에 신설된 기관이다.

1) 普成専門學校

私立 고등교육 기관에 대한 억압책을 집행한

34) 동 제1381호(1917.3.14).

35) 동 1918.4.1號外.

36) 상동.

37) 朝鮮總督府學務局, 朝鮮教育要覽, 昭和 4, p.115.

조선 총독부는 1915년 4월에 종전의 普成専門學校를 각종학교인 私立普成法律商業學校로 격하시켰다.³⁸⁾ 그러나 本校에서는 法律學과 商業學의 專門敎育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여 법률학과 상업학에 대한 전문적 고등교육을 여전히 실시하였다.³⁹⁾

本校는 3년제의 야학 과정으로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야간 수업을 실시하고, 學生定員은 600명이었으며, 學年(4.1~3.31)을 3학기제로 운영하였다. 설치 과정은 法律科와 商業科였으나, 농업학과 공업학의 설치도 學則에 명시하였다.⁴⁰⁾ 입학 자격은 16세 이상의 男子로 高等普通學校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學校를 졸업한 자로 하였다.⁴¹⁾

學科別 교과목은 다음과 같다.⁴²⁾

① 法律科

修身·法學通論·憲法·行政法·刑法·民法·商法·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파산법·국제법·經濟學·日語·부기·통계 및 실무

② 商業科

수신·상업통론·鐵道 및 海運·海關倉庫·보험·은행·상업지리·상업역사·상품학·화폐·부기·상업신술·경제학·법학통론·民法·상법 및 파산법·국제사법·日語·英語·실천

2) 세브란스聯合醫學専門學校

한국 최초의 현대식 정규 의학교로 1899년에 설립된 濟衆院醫學校⁴³⁾가 1909년에 사립세브란스의학교로 개명되고⁴⁴⁾, 1913년에는 국내에서 宣敎活動을 전개하던 美國의 남북장로회, 남북감리회, 캐나다장로회, 호주장로회 등 6개 교파의 宣敎會가 本校의 지원에 협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學校名을 다시 私立세브란스 聯合醫學校로 개칭하였다.⁴⁵⁾

사립 세브란스 연합 의학교는 1914년도 졸업생부터 在學期間을 4년으로 고정하고, 한국 최초로 인턴 제도를 채택하여 졸업자는 졸업 후 1년간 각 과를 순회하면서 실습 경험을 쌓게 하였다.⁴⁶⁾

本校는 1917년 5월 10일자 朝鮮總督府 告示 제123호로 조선 총독부로부터 1917년 5월 14일자로 京城私立세브란스 聯合醫學専門學校 財團法人의 설립을 허가받음으로써⁴⁷⁾ 本校는 專門學校로 승격되었다.

朝鮮人에게 醫學의 原理와 實際에 관한 특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사립 세브란스 연합 의학 전문학교는 4년제로 입학 자격을 선량한 성격, 만 20세 이상된 자, 醫學 공부하기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적합한 자, 高等普通學校 졸업자나 이와 동등 이상의 學力を 가진 자로 하였다. 學年(4.1~3.31)을 3학기로 나누고, 學生定員은 80명이었으며, 진급·졸업 기준은 각 과목에서 60% 이상이어야 하고, 전과목 평균을 70% 이상으로 하였다. 직원으로는 校長·副校長·學監·敎授·助敎授·강사·서무원 등을 두도록 하고, 교과목은 윤리학·해부학·조직학·物理學·化學·生物學·生化學·生理學·약물학·치료학·病理學·임상병리학·미생물학·위생학·內科·外科·안과·이비인후과·산부인과·소아과·신경 및 정신과·치과·法醫·日本語·英語·數學·體育 등이었다.⁴⁸⁾

3) 延禧専門學校

1915년 4월에 설립된 復新學校 大學部(文科)

38) 高麗大學校 70年誌編纂室, 高麗大學校 70年誌, 高麗大學校, 1976, p.67.

39) 위의 책, p.70.

40) 상동.

41) 위의 책, p.72.

42) 위의 책, p.71.

43) 연세대학교 편찬위원회, 연세대학교사,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1, p.1333.

44) 위의 책, p.1335.

45) 위의 책, p.63.

46) 위의 책, p.71.

47) 조선총독부관보 제1433호(1917.5.16).

48) 연세대학교사, pp.77~83.

· 商科·理科·農科)를 모체로 하여 美國의 북장로교와 남북감리교·캐나다장로교 등의 諸宣教部로 구성된 聯合委員會가 1917년 4월 10일자 朝鮮總督府 告示 제80호로 1917년 4월 7일자로 조선 총독부로부터 私立延禧專門學校 基督敎聯合財團法人的 설립 인가를 받음으로써⁴⁹⁾ 신설된 私立延禧專門學校의 制度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⁵⁰⁾

朝鮮人 男子에게 문학·신학·농학·상업학·수학 및 물리학·응용화학 등에 관한 專門教育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연희전문학교는 文學科·神學科·農學科·商科·數學 및 物理學科·應用化學科 등 6개 학과를 두되, 수업 연한은 文學·神學·數物科는 4년으로 하고, 農科·商科·應用化學科는 3년으로 하였다. 입학 자격은 品行이 방정한 자로 만 17세 이상의 高等普通學校 졸업자나 이와 동등 이상의 學力이 있는 자로 하고, 學生定員은 상과 30명, 문과·신과·농과·수물과는 각각 20명, 응용화학과는 10명이었다. 직원 조직은 校長·副校長·學監·敎授·副敎授·강사·助手·書記·사감으로 되어 있고, 교과목은 修身·日語·英語·體操 등의 과목을 공통으로 과한다. 學科別 교과목은 다음과 같다.

① 文學科

英文學·歷史·地理·數學·動植物 및 생리위생·지질학 및 천문학·物理化學·敎育學·漢文·論理學·哲學·心理學·倫理學·부기원리·經濟原論·社會學·音樂

② 神學科

英文學·歷史·地理·動物學·植物學·지질학·聖書地理·聖書·부기원리·경제원론·漢文·敎育學·心理學·倫理學·논리학·哲學·敎會史·교회근무실천·敎理學·信仰原理·主日學校組織 및 方法·音樂

③ 數物科

數學·物理·化學·力學·測量法·기계제도·電氣工學·건축학·공장기계·지질학·天文學·

敎育學

④ 商科

수학·경제·상업사·상업지리·상업학·상품학·부기·法學·取引所·화폐론·보험론·倉庫·海關論·印字法·상업실천

⑤ 農業科

수학·부기·농업경제·지질학·토양학·비료학·物理·化學·기상·動物·植物·생리위생·作物·원예·작물병충학·농산재조학·가축사양론·응용세균학·양잠·농업공학·林學·농업설습

⑥ 應用化學科

수학·物理·무기화학·物理化學·分析化學·유기화학·공예화학·電氣化學·지질학·광물학·화학실습

4) 崇實大學

1912년에 조선 총독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大學으로 운영해 오던 崇實大學은 1915년에 개정된 私立學校 規則에 따라 專門學校敎育은 새로 제정된 專門學校 規則에 의거하게 되어 崇實大學은 普成専門學校와 마찬가지로 各種學校로 격하되었으나⁵¹⁾, 崇實大學에서는 여전히 계속해서高等教育을 실시하였다. 崇實大學의 1912~1913년도 교과과정은 聖經·數學 및 天文學(대학대수·삼각법과 측량·해석학·선택수학·이론천문학·실천천문학)·歷史學 및 經濟學(영국사·미국경제사·근대경제사·경제학·사회학·교회사·민법)·自然科學(生物學·化學·物理學·고급식물학·농업·物理·化學·심리학·林學·지질학·광물학)·人文科學(기초심리학·교육학·윤리학·논리학·종교사·기독교사·심리학·哲學)·語學(古典·영어·日本語·독어·作文·話法·토론·음악)·實科(工作·제도) 등으로 되어 있다.⁵²⁾

5) 私立京城高等商業學校

조선 총독부는 1916년 6월 30일자 조선 총독

49) 朝鮮總督府官報 제1402호(1917.4.10).

50) 연세대학교사, pp.301~311.

51) 숭실대학교 90년사 편찬위원회, 숭실대학 90년사, 숭실대학교 출판부, 1987, p.128.

52) 위의 책, p.147.

부 告示 제158호로 財團法人 私立東洋協會殖民專門學校 京城分校의 설립 인가를 1916년 6월 28일자로 허가하였다.⁵³⁾ 本校는 1918년 4월에 私立東洋協會專門學校로 개편되었다가 1920년 5월에 또다시 私立京城高等商業學校로 개칭되었다.⁵⁴⁾

私立京城高等商業學校는 3년제로 입학 자격은

中學校 및 甲種商業學校 졸업자, 專門學校 입학자 김정 규정에 의한試驗檢定에 합격한 자, 文部大臣이 一般專門學校의 입학에 관해 中學校를 졸업한 자와 등등 이상의 學力이 있는 자로 지정받은 자 등으로 하고, 입학 시험 과목은 英語(英文和譯·和文英譯), 數學(代수·평면기하), 國語 등이었다.⁵⁵⁾

*

53) 朝鮮總督府官報 제1172호(1916.6.30).

54) 朝鮮總督府學務局, 朝鮮教育要覽, 昭和 4, p.115

55) '生徒募集' (私立京城高等商業學校) — 朝鮮總督府官報 제2523호(1921.1.12).